

# 현장 검토

2005년 10월

[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

## 의장이 전하는 메시지



**뉴**욕 시민들은 11월 8일 기표소에서 차기 시장 선출에서 현장 개정 여부에 이르기까지 뉴욕시의 미래에 관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 사법 개혁과 재정 안정 등 몇 가지 특정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 여년 전 Michael R. Bloomberg 시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선거일에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두 가지의 표결안을 8월 2일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결국 두 사안 모두에 대한 제의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위원회가 최종 권장안을 완성하기까지는 전체 5개의 자치구에서 개최된 23차례의 공개회의, 공청회, 포럼 뿐 아니라 그 밖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가 이룩한 결과는 물론, 목표 도달을 위해 겪은 전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공 아웃리치 노력은 전문가, 정치인 및 시민들의 증언과 의견을 이끌어 내었으며, 강력한 시정부 운영을 위한 변화에 대한 합의 도달에 도움이 될 상당 수의 활발하고 유익한 토론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들 제안은 투표용지에 제의 3과 4로 기입됩니다.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호인 본 현장 검토에는 각 제의에 대한 설명과 지난 해의 핵심 활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주정부 법안]에 의거한 주요 재정 관례가 뉴욕시 운영에 효과적이었으며” 현장에도 성문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위원회는 사법 윤리에 대한 제의가 “[뉴욕시 행정] 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분쟁 해결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개혁을 통해 시정부를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훌륭한 뉴욕 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진정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도 중차대한 시민의 임무를 위해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ster Fuchs, Ph.D.  
의장

현장 검토는 뉴욕 유권자들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2004-2005 뉴욕시 현장 개정 위원회는 **현장 검토**를 주기적으로 간행해 왔으며, 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Lafayette St., 14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 (212-676-2060). 위원회 웹사이트([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에서 공개회의, 공청회, 포럼의 원고와 관련 보고서의 사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ster R. Fuchs, 의장  
Dall Forsythe, 부의장  
Stephen J. Fiala, 서기

Robert Abrams  
Curtis L. Archer  
Lillian Barrios-Paoli  
Amalia V. Betanzos  
David Chen  
Anthony Crowell  
Stanley E. Grayson  
Mary McCormick  
Stephanie Palmer  
Jennifer Raab



### 추가 정보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현장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개 회의 원고, 위원회 예비 보고서 및 현장 위원회의 이전 보고서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입니다. 기타 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212-676-2060  
팩스: 212-676-2069  
우편주소:  
NYC Charter Revision Commission  
2 Lafayette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07

# 현장 검토

## 위원회, 11월 표결안에 “찬성”

**N**ュ시 현장 개정 위원회는 시정부의 향후 재정과 윤리에 관한 1년 간의 공공 심의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거당일 유권자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의 표결안을 채택하는 사안을 8월 2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맨하탄 110 William Street에서 개최된 최종 회의에서 위원회는 2005년 11월 8일 투표용지에 제의 3과 4로 기재될 사안을 채택하고, 최종 보고서인 “책임감 제고: 균형 예산 및 행정 윤리”를 승인하였습니다. “험난한 과제였으며 지

난 11개월에 걸쳐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결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Ester R. Fuchs 의장은 말했습니다. “향후 뉴욕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치 있고 중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의장은 또한 위원회 각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뉴욕시를 위한 봉사정신을 치하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훌륭하고도 훌륭한 뉴욕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장들도 위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학자들이 무엇이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중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겸 서기인 Stephen J. Fiala가 말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유지하고 사법 윤리 개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대중적인 사안들을 다루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죠… 그리를 겁니다.”

## 투표 용지에 게재될 사안\*

다음은 2005년 11월 8일 유권자들이 결정할 지역 제안 사항입니다.

### 제의 3

뉴욕시 현장 개정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현장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시장

과 행정재판 및 청문회 사무소(OATH)의 행정법 주임 판사가 함께, 뉴욕시 행정 재판소의 행정법 판사들과 청문회 간부들을 위한 전문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채택되어야 합니까?

### 제의 4

뉴욕시 현장 개정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현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은 재정 명령을 현장 필수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명령은 현재 통상적으로 1975년 뉴욕시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주정부 법안을 통해 뉴욕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채택되면 이러한 명령을 뉴욕시 현장에 추가함으로써 주정부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는 해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GAAP)에 부합하는

균형 예산을 작성하고, 해당 원칙에 부합되도록 매년 적자 없이 회계연도를 마감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해마다 합리적인 추정에 기반하고 적어도 분기별 수정을 거친 4개년 시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은 뉴욕시의 부채 상환 비용과 자금부족을 충당할 최소 1억불의 일반 예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예상 적자 충당 또는 세수, 수입, 및 채권 수익을 예상하여 시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부채에 대한 현장의 협행 제한 사항에 추가 조건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건은 주로 단기 부채의 상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한다.

- 뉴욕시 계정에 매년 행해지는 감사에 대해 추가 조건을 부여한다. 이들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감사 기준의 적용 및 감사원의 기록 검토 권한과 관련되므로, 시정부 회계연도 마감 후 4개월 내에 감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채택되어야 합니까?

\* 투표 제의 1 및 2는 주정부 표결안입니다.

# 헌장 검토

## 왜 이 두 가지 제안이 필요한가?

### 제의 3

뉴욕시 행정 재판소는 뉴욕 시민들이 시정부와 접촉하게 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주차 위반, 시공무원 징계, 지저분한 보도와 빌딩, 화재 조례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 등과 같이 법정과 유사한 절차를 감독하는 행정법판사(ALJ) 및 청문회 간부들은 뉴욕시의 정의를 대변하는 얼굴인 것입니다.

수십만의 뉴욕 시민들은 주로 이러한 재판소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재판소의 절차와 감독관이 공정하고 윤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행정법판사와 청문회 간부들이 시

차원의 이해 상충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되고는 있으나, 준사법적 업무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 행동강령이 없습니다.

일률적인 행동 및 윤리 강령의 제정 목적은 책임감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윤리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의 3은 시장과 행정재판 및 청문회 사무소의 행정법 주임 판사가 함께 해당 강령을 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판소의 절차와 그 감독관이 공정하고 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제의 4

1975 이전, 뉴욕시는 방만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단기 부채를 발행해 왔으며,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절한 회계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과 기타 재정 기관들은 뉴욕시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신용 시장의 접근을 철폐함으로써 대규모의 재정 위기를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재정 안정의 회복을 돋기 위해 주정부 입법부는 재정 위기법(FEA)을 제정하였습니다. 여러 조항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FEA는 뉴욕시로 하여금 매년 4

개년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균형 예산을 채택하며, 1억불 이상의 적자 없이 회계연도를 마감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감사를 매년 시행하고, 단기 부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FEA 조항은 2008년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으며 기타 조항은 그 이후에 효력 상실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뉴욕시는 누구나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재정 계획 및 관리 도구인 FEA 조항들을 즉시 헌장에 도입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2008년 일부 FEA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뉴욕시 재정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방안 관련 토론이 거론되기 전에, 건전한 재정 관행에 관한 시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같은 관행을 (적절한 수정과 더불어) 헌장에 영구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제의 3 및 4를 위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CRC 웹사이트([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에 있는 위원회의 2005년 핵심요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시기

형식적으로 볼 때, 두 제안은 유권자 다수에 의해 채택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유권자가 해당 제안을 승인할 경우, 변경사항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여러 시기에 걸쳐 발효될 수 있습니다.

### 제의 3

유권자들이 제의 3을 승인할 경우, 시장과 OATH의 행정법 판사는 각계각층의 기관들과 협의하여 ALJ와 청문회 임원들

을 위한 전문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의를 위한 입안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안 과정의 결과는 뉴욕시 행정 절차법(the Cit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에는 공지 및 의견수

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찬성 투표 결과가 즉시 새로운 강령을 제정하도록 승인하기는 하나 그 절차가 바로 완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제의 4

유권자들이 제의 4를 승인할 경우, 헌장에 추가된 모든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재정

위기법(Financial Emergency Act)의 효력이 있는 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

# 현장 검토

## 연혁 검토

다음은 지난 8월에 설립된 위원회의 주요 연혁입니다.

### 2004년 8월 19일

Michael R. Bloomberg 시장이 13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 Ester R. Fuchs가 의장으로 임명.

### 2004년 8월 26일

로어 맨하탄에서 첫 공개회의 주최.

### 2004년 11월 3일

로어 맨하탄에서 2차 공개회의 주최. 위원회는 조달 제안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회계연도 중 지역법규의 채택이 가져올 예산 타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

### 2004년 12월 8일

로어 맨하탄에서 3차 공개회의 주최. 재정 안정으로 초점이 변경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추구.

### 2005년 1월 19일

로어 맨하탄에서 4차 공개회의 주최. 행정 사법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본적” 이해. 위원회의 현장 전문 검토 촉진을 위하여 현장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가 발표함.

### 2005년 2월 9일

로어 맨하탄에서 5차 공개회의 주최. 기관의 효율, 능률 및 책무에 초점을 맞추어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본적” 이해.

### 2005년 3월 4일

Fuchs 의장은 각 자치구에서 개최될 5차례 공청회를 위한 지침으로 “고려중인 사안의 요약”을 공표. 이 요약은 위원회가 관련 부문의 현장 개정을 위하여 종점을 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의장이 제시한) 위원회의 초기 사안에 대한 개요를 포함.

### 2005년 3월 7일

행정 사법 개혁에 관한 전문가 포럼에 이어 퀸즈에서 공청회가 개최됨.

### 2005년 3월 16일

브론즈에서 공개 회의 개최.

### 2005년 3월 23일

재정 안정에 관한 전문가 포럼에 이어 브룩클린에서 공청회가 개최됨.

### 2005년 3월 30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공청회 개최.

### 2005년 4월 4일

기관의 효율, 능률 및 책무에 관한 전문가 포럼에 이어 맨하탄에서 공청회 개최.

### 2005년 5월 3일, 2005년 5월 16일, 2005년 5월 25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증언을 토론하고, 직원들로부터 표결안에 대한 권장 사항을 수집하여 이미 개최된 공청회와 전문가 포럼에 입각하여 제시된 권장안을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공개회의 개최.

### 2005년 6월 9일

위원회가 시민들의 고려와 토론을 위하여 “현장 개정을 위한 예비 권장안”이라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투표를 통과함.

### 2005년 6월 10일

위원회의 “예비 권장안” 공개 발표.

### 2005년 6월 15일, 2005년 6월 22일, 2005년 6월 27일

위원회의 예비 권장안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 개최됨.

### 2005년 7월 5일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권장안을 개정하기 위한 공개 회의가 위싱턴 하이츠에서 열림.

### 2005년 8월 1일

위원회는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보고서와 제안된 표결안을 토론하고, 보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위원회 창설을 위한 세 번째 제안을 향후 고려사항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사안을 통과하였음.

### 2005년 8월 2일

위원회는 공개 회의 개최를 통하여 두 개의 남은 제안을 표결안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을 통과시키고 최종 보고서인 “책임감 제고: 균형 예산 및 행정 윤리”를 승인함.

### 2005년 8월 3일

위원회가 제안된 현장 개정 사항을 시정부에 제출.